■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신설 2013.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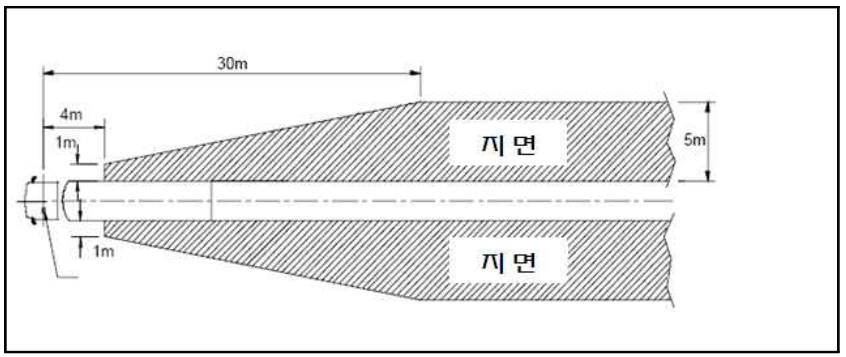
후사경의 설치기준 및 시계범위(제151조 관련)

1. 후사경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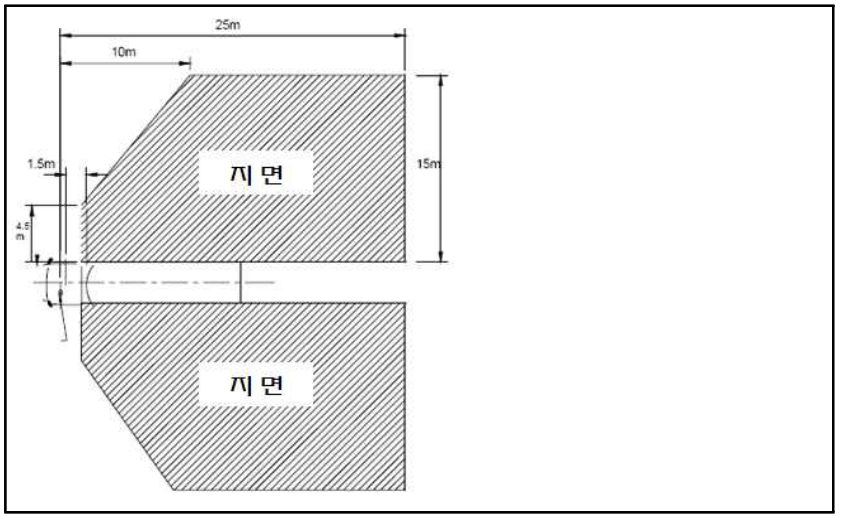
구분	종류	실외후사경	광각 실외후사경	근접 실외후사경
	곡률반지름	120cm 이상	30cm 이상	30cm 이상
자체중량 7.5톤 초과 건설기계		○	○	○

주) 1.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은 조종사측과 승객측에 각각 1개씩, 근접 실외후사경은 승객측에 1개 설치하여야 한다.
2. 근접 실외후사경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3. 같은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곡률반지름 및 후방시계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3. 광각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4. 근접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